

원자력전략 · 정책연구

심사 규정

제정: 2024년 11월 30일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원자력전략·정책연구 (Review on Nuclear Energy Strategy and Policy)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절차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논문심사 주관)

- 논문심사는 원자력전략·정책연구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.
-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전 투고된 논문의 연구 분야와 학술지 게재 적합성, 연구윤리 규정 준수 여부, 발행 및 투고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정한다.

제3조(심사위원의 자격과 선정기준)

심사위원의 자격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연구 업적이 있는 자여야 한다.
-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통해 선정되며, 각 편집위원은 최소 2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해야 한다.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.
- 논문심사는 단일 암맹 심사(single-blind review) 방식으로 진행된다.

제4조(심사기준과 기간)

-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

2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.

- ②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20일 이내, 재심인 경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- ③ 편집위원장, 편집위원, 심사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심사서를 활용한다.

제5조(판정)

- ① 심사 결과는 (1) 게재 가능, (2) 수정 후 게재, (3) 수정 후 재심, (4) 게재 불가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.
- ② 최종판정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.
- ③ 판정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저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한다.

제6조(판정 후속조치)

- ①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술지에 게재된다.
- ②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저자가 수정 원고와 ‘수정사항 반론서’를 제출하면, 편집위원장 또는 담당 편집위원이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
- ③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저자가 수정 원고와 ‘수정사항 반론서’를 제출하면,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을 수행하며, 재심 결과는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
- ④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, 수정 후 재심,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, 심사서에 구체적인 수정 요구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.
- ⑤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1개월 이내에 수정 원고와 ‘수정사항 반론서’를 제출해야 하며, 기한 내 미제출 시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.
- ⑥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동일한 내용을 수정 없이 재투고할 수 없다.

제7조(논문 게재 예정증명서)

- ① 편집위원회가 ‘게재 가능’으로 최종 판정한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경우 논

문 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.

- ②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발급 요청이 접수되면, 편집위원회의 승인 후 발급이 이루어진다.

제8조(개정)

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4년 11월 30일자로 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.

[심사자 1]

논문명	
저자명	
심사일	
판정	게재 가능 () 수정 후 게재 () 수정 후 재심 () 게재 불가 ()
심사평	

[심사자 2]

논문명	
저자명	
심사일	
판정	게재 가능 () 수정 후 게재 () 수정 후 재심 () 게재 불가 ()
심사평	

[편집장 최종 판정]

논문명	
저자명	
심사일	
판정	게재 가능 () 수정 후 게재 () 수정 후 재심 () 게재 불가 ()